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의결사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앙행정기관 장의 취약점 분석·평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 장의 보호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확대하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870호, 2022.6.10. 공포)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3 제1호라목, 제2호)

1) 과태료 부과근거가 신설된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 가중된 과태료가 법에서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3 제1호라목)

2)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와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대된 보호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 변경(안 별표3 제2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본문 및 별표 3 제1호라목 단서 중 “법 제30조제1항”을 각각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호	600	1200	2000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150	300	500
다.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2호	200	350	5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table>
<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colspan="3">과태료 금액(단위: 만원)</th></tr>
<tr><th>1차</th><th>2차</th><th>3차 이상</th></tr>
<tr><td>가. 법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td><td>법 제30조 제1항 제1호</td><td>200</td><td>500</td><td>1000</td></tr>
<tr><td>나. <삭 제>
<2021. 3. 9.></td><td></td><td></td><td></td><td></td></tr>
</table></td><td>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라.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2. 개별기준
<table>
<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colspan="3">과태료 금액(단위: 만원)</th></tr>
<tr><th>1차</th><th>2차</th><th>3차 이상</th></tr>
<tr><td>가. 법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td><td>법 제30조 제1항 제1호</td><td>600</td><td>1200</td><td>2000</td></tr>
<tr><td>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아니한 경우</td><td>법 제30조 제2항 제1호</td><td>150</td><td>300</td><td>500</td></tr>
<tr><td>다.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td><td>법 제30조 제2항 제2호</td><td>200</td><td>350</td><td>500</td></tr>
</table></td></tr>
</table>

〈 의안 소관 부서명 〉

사이버침해대응과	
연 락 처	044-202-6465